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8399

2009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 민 수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향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2009년 8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 민 수

Collection @ chosun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 민 수

Collection @ chosun

유민수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6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v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 2
3. 용어의 정의 ····· 3

Ⅱ. 이론적 배경 ····· 4
1.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과 기능 ····· 4
2.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근거 ····· 6
3.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성요소 ····· 8
4. 선행연구 고찰 ····· 9

Ⅲ. 연구방법 ····· 12
1. 연구대상 ····· 12
2. 연구도구 ····· 14
3. 연구절차 ····· 15
4. 자료처리 ····· 16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18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실태 ····· 18
2.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의 실태 ····· 35
3.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의 실태 ····· 40
4.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선 방향 ····· 43

Ⅴ. 결론 및 제언 ····· 48

dCollection @ chosun

1. 요약 ····· 48
2. 결론 ····· 49
3. 제언 ····· 50

참고문헌 ····· 52
부　　록 ····· 54

d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Ⅲ-1> 시각장애특수학교별 참여 교사 현황 ····· 13
<표 Ⅲ-2> 연구 참여 교사들에 대한 기초 사항 ····· 13
<표 Ⅲ-3>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실태 조사영역, 내용 및 문항 수 ····· 15
<표 Ⅳ-1> 담당학급 학생수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대상 학생수의 학교별 비교 ·· 19
<표 Ⅳ-2> 단순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실태 ····· 19
<표 Ⅳ-3> 단순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 대한 의견·20
<표 Ⅳ-4> 학년 시작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실태 ····· 21
<표 Ⅳ-5>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에 관한 실태 ····· 22
<표 Ⅳ-6>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출처 ····· 23
<표 Ⅳ-7>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에 포함된 항목 ····· 24
<표 Ⅳ-8> 학생 실태 파악 영역 ····· 26
<표 Ⅳ-9>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 파악 방법 ····· 27
<표 Ⅳ-10>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 참여 여부에 관한 실태 ·· 28
<표 Ⅳ-1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 의견 반영 정도에 관한 실태 ··· 29
<표 Ⅳ-12>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영역에 관한 실태 ····· 30
<표 Ⅳ-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범위 ····· 31
<표 Ⅳ-14> 교육목표 수준 ····· 32
<표 Ⅳ-15> 작성 소요 시간 ····· 33
<표 Ⅳ-16>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 ····· 34
<표 Ⅳ-17>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 정도에 관한 실태 ····· 35
<표 Ⅳ-18> 개별화교육계획의 미 실행 이유에 관한 실태 ····· 36
<표 Ⅳ-19>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재교구확보에 관한 실태 ·· 37
<표 Ⅳ-20>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ICT활용 정도에 관한 실태 ·· 38
<표 Ⅳ-21> 개별화교육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학부모와의 의사교환 ·· 39

dCollection @ chosun

<표 Ⅳ-22>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방법 ····· 40
<표 Ⅳ-23>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형태 ····· 41
<표 Ⅳ-24>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활용에 관한 계획 ····· 42
<표 Ⅳ-25>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 횟수 ····· 43
<표 Ⅳ-26>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의 도움 정도 ····· 44
<표 Ⅳ-27>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중요도 순위 ····· 45
<표 Ⅳ-28>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개선 ····· 46

dCollection @ chosu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Min-Su Yoo
Advisor : Prof. Young-il Kim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ractice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IEP)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 total of 97 teachers from 11 schools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for this study, consisting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ncluded six items about the teachers' demographic and teaching-related variables; the second part comprised 27 items regarding the writ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IEP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to April 30 in the year of 2009.

For the most part,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write IEP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Education Law and its regulations. It is notable that the majority of teachers evaluated the current level of

dCollection @ chosun

their students' performance in a variety of areas based on their informal observations, not on the formal test instruments, which indicated the need for developing test instrument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It is also notable that the majority of teachers thought that the IEPs should be written only for some of students in some of the areas. The teachers believed that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put in the area of daily living skills when writing the IEP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he participants emphasized the need for designing the IEP format, developing materials and devices, and operating the IEP team appropriate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dCollection @ chosu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77년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법적 토대였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 26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과거의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무상 및 의무 교육의 연한 확대, 장애영아 지원 및 평생교육 확대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체제 구축, 발달지체 신설 및 자폐성장애 분리·신설 등 특수교육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기회를 크게 확대시키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특수교육법은 조기 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체계의 재확립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특수교육전달체계를 재확립하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주체라고 규정하였고(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였다(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이에 비해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주체로 규정하였으며(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각급 학교의 장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기구가 되었다(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학년 단위로 작성하며, 학년 시작 일전에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에 비해,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학기 단위로 작성하며(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특수교

dCollection @ chosun

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비해 획기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으로 유치원 과정의 경우 4인 이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6인 이하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7인 이하라고 제시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특수교육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이 규정에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에 비해 특수교육법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내용 중 하나인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법 적용의 실태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이 어떻게 작성·실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시각장애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시각장애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시각장애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dCollection @ chosun

3. 용어의 정의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관련 별표)

· 개별화교육계획 :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는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을 개별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이란 이러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의하여 작성, 실행, 평가되는 문서이다.

dCollection @ chosun

Ⅱ. 이론적 배경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가장 알맞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가 개별화교육계획이다. 이 장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과 기능, 법적 근거, 구성요소,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과 기능

이유훈(2002)은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제한된 능력을 최대한 신장·계발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선 장애학생의 교육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이 왜 필요한지는 먼저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 및 가정의 역할과 연대의 필요, 그리고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및 가정의 역할과 연대의 필요성'에서 학생의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부모도 가정에서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인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IDEA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으로써 개별화교육계획 회의는 부모와 학교간의 의사소통 매개수단으로써 도움이 되며, 부모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필요에 맞는 서비스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필요성에 대해 학교 당국과 부모와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생활기능의 습득 등이 학교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정도나 발달단계에 따라 가정교육의 내용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학생의 교육에 임하는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학교에서 맡아

dCollection @ chosun

야 할 부분, 가정에서 맡아야 할 부분, 그리고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야 할 부분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체제의 확립이 보다 더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와 가정간의 연대 협력을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중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별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기준의 탄력화가 보다 요구된다. 즉,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이나 지도 목표 등이 개별 학생에 따라 특별히 설계된 개별화교육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바른 이해를 위한 평가, 지도과정의 평가, 목표 달성 과정의 평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활동이 필요하다. 계획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평가활동이 없다면 지도의 적절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적시성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문서화하여 지도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개별화교육계획 역할은 보다 중요한 것이다. 특히 발달단계나 장애에 대한 다양한 대처가 특징인 장애학생의 교육에서 개별 학생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개별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도계획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학교와 가정과의 연대 협력 강화 및 양자간 의사소통이나 의견조정, 그리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은 개개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는데 있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은 학교와 가정과의 의사소통이나 연대 협력을 지원하는데 있다(최은희, 2007).

미국 교육부는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과 기능을 ① 부모와 학교 관계자들간의 의사소통수단, ② 부모와 학교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제공, ③ 자료에 대한 합의문서, ④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보증하는 관리의 수단, ⑤ 정부 공무원들의 서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문서, ⑥ 계획된 결과의 성취를 향해 학생이 진보되어 가는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장치 등

dCollection @ chosun

6가지를 들고 있다(이유훈・김형일, 2002).

한성희(1992)는 개별화교육계획을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취지와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경영안으로서의 개별화교육계획이다. 이는 개별화교육계획을 통해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수업을 계획하는데 따라야 할 지침이 된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은 적합한 사정자료에 기초하여 학생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미리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행정가, 관련서비스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함으로서 책무성을 고취시킨다. 셋째, 개별화교육계획은 평가문서이다.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해 서비스의 전달사항이 모니터 되며, 진전 상황이 평가된다. 넷째,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아를 둘러싼 관련인사 상호간의 의사교환도구의 역할을 하며, 이는 상호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개별화교육계획의 목적과 기능은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교수적 기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류 평등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개별화교육의 기능은 행정가에게 관리의 준거를, 교사들에게는 공식화된 계획을, 부모에게는 발언권을, 학생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이유훈・김형일, 2002).

2.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근거

개별화교육이 특수교육에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미국의 장애아교육법이다. 이 법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 완전취학,

dCollection @ chosun

② 공정한 평가, ③ 개별화교육계획, ④ 최소제한환경, ⑤ 합당한 절차, ⑥ 부모의 참여 등 6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6대 요소 가운데 개별화교육계획은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유훈, 1999).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모든 학생이 그들의 소질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각자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줄 때 진정한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황안섭, 2000).

우리나라 특수교육법 제22조 (개별화교육)에서는 ①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에서는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

dCollection @ chosun

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개별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성요소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 학생의 강점, 요구 및 필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은 장애학생과 가족의 요구 및 필요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평가·분석되어 특수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의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송수일, 2007).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③항은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성요소로서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② 현재 학습수행수준, ③ 교육목표, ④ 교육내용, ⑤ 교육방법, ⑥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은 ① 일반교육과

dCollection @ chosun

정에 일반학생과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② 전환교육 서비스, ③ 권리의 위임, ④ 학령기의 연장에 관한 진술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원희, 이민식, 장진섭, 하미경, 2002).

미국의 경우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일반 교육에 참여할 시간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교나 학급에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반드시 반영되어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추은숙, 2008).

4. 선행연구 고찰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져 왔는데, 주로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 실태와 특수교육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수행능력, 개선방안에 대한 특수교육교사의 인식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개별화교육계획이 특수교육에 필요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노안심(2007)은 전남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원 실태에 있어 대부분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학급아동들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관리자들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장학지도,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등을 지적했다. 이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의 다수 배출로 인해 전문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특수교육교사들의 충천된 의욕에 비해 특수교육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구태의연한 현장을 비판적인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장학 진을 포함한 관리자들과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연수 기회 확대 또는 주기적인 특수교육연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dCollection @ chosun

박성미와 안성우(2008)는 교사들의 IEP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성자료의 부족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기술 부족, 시간 부족, 주위 이해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수학급 전용 지도서의 개발, 학습 자료의 확충 및 보급, 평가 및 측적 도구의 개발, 연수 기회의 확대, 일반교사의 협력 및 교류로 조사되었다.

차미주(2007)는 개별화교육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면담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별화교육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과 진행 수준을 높게 설정한 경우, 개인에게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훈련과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습자의 태만으로 훈련이나 학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 학교의 행사나 잡무 처리로 인하여 교사의 교수적 노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과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효과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이 자체를 업무로 느낄 수 있으므로 양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구의 준비가 필요하며, 담임교사를 배제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운영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황안섭(2000)은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작성은 하고 있지만 실행 정도는 낮으며,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원적학급 교사간의 의견교환이 부족하고, 경영자 및 학부모의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박윤규(1996)는 어느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학생의 현재 수준을 밝히는 정확한 진단 검사의 실시 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다양한 수업자료와 다양한 수업설계가 부족하다. 셋째,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동목표로 진술된 통일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학습과제를 분석하고 분석된 과제의 계열에 따라 지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

dCollection @ chosun

한 교사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문제가 개서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시각장애학교 개별화교육의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개별화교육으로 흐르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화교육 연구 협력학교 운영결과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시각장애학교의 특성에 맞는 각 교과 영역별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둘째, 시각장애학생 개개인 발달 정도와 장애 정도에 맞는 개별화 교수-학습 방법의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생활적응 교과에 대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기본 동작, 옷차림, 식생활, 신변처리, 일상생활언어, 보행능력 및 점자 학습능력 등을 신장시켜 다른 교과 학습능력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친밀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고 학생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특수학교 11개교의 학급 담임교사 97명이었다.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 실태를 알아보고자 수행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장애특수학교 학급담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특수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자료수집에 협조해 줄 교사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교사에게 설문지를 각각 12부씩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발송된 설문지 총 144부에 대해 113명의 교사가 응답함으로써 회수율은 78.5%였다. 그러나 응답교사 113명 중 학급담임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 16명이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인 자료 분석에서는 이들의 응답을 제외시켰으므로, 이 연구의 최종 참여 교사 수는 97명이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특수학교 12개교 중 학내사정으로 인해 설문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1개교를 제외한 11개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시각장애특수학교 1개교를 제외한 학교별 교사 수, 학급 수, 설문지 응답 교사 수, 최종 연구참여 교사수를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표 Ⅲ-1> 시각장애특수학교별 참여 교사 현황

학교	교사수(명)	학급수(개)	응답교사수(명)	최종참여교사수(명)
A	40	19	9	8
B	42	21	9	5
C	32	17	11	11
D	41	21	8	8
E	34	20	7	6
F	77	38	12	5
G	25	14	8	8
H	27	13	11	9
I	19	13	11	11
J	44	25	12	12
K	35	17	15	14
계	416	218	113	97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기초 사항을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 참여 교사들에 대한 기초 사항(N=97)

변 인	구 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 별	남	39	40.2
	여	58	59.8
연 령	29세 이하	30	30.9
	30-39세	39	40.2
	40-49세	25	25.8
	50세 이상	3	3.1
학교급	초등학교	43	44.3
	중학교	23	23.7
	고등학교	31	32.0
자격유형	일반교육교사	3	3.1
	특수교육교사	68	70.1
	일반+특수교육교사	26	26.8

dCollection @ chosun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성별을 보면 여교사가 58명(59.8%)이었고 남교사가 39명(40.2%)으로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다소 많았다. 교사의 연령을 보면 29세 이하가 30명(30.9%), 30~39세가 39명(40.2%), 40~49세가 25명(25.8%), 50세 이상이 3명(3.1%)으로서 학급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교사는 거의 없었고, 20대, 30대, 40대 교사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교급별을 보면 초등학교가 43명(44.3%), 중학교가 23명(23.7%), 고등학교가 31명(32.0%)으로서 중학교 학급담임교사보다 고등학교 학급담임교사가 조금 더 많이 참여한 것이 주목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자격유형을 보면 특수교사가 68명(70.1%)으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일반교육교사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26명(26.8%)이었으며, 일반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교사는 단지 3명(3.1%)에 불과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직경력은 평균 8.5년(표준편차: 7.3년)으로서 교사들 간의 교직경력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교직경력은 평균 5.6년(표준편차: 5.6년)으로서 총 교직경력보다 약 3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시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및 운영실태와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개선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였다(부록 참조). 이 설문지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강남숙, 2005; 노안심, 2007; 이유훈 등, 2002; 차미주, 2007; 황안섭, 2000)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2008년 5월 26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각장애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수

dCollection @ chosun

정・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연구대상 교사들에 관한 인적사항을 묻는 기초사항 부분과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해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은 교사의 성별, 연령, 학교급별, 자격유형, 교직경력, 총 교직경력 및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의 교직경력 등 총 6문항이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해서는 다시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 관한 16문항,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에 관한 4문항,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에 관한 3문항, 개별화교육계획 개선방안에 관한 4문항 등이었다. 이 설문지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실태 조사영역, 내용 및 문항 수

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주요내용
기초조사		6	인구학적 특성 및 교직관련 영역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16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학생실태 파악 영역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4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정도 및 보호자와의 소통정도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3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및 평가자료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개선방안	4	개별화교육계획 연수 및 개선해야 할 점

dCollection @ chosun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자는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선행문헌(강남숙, 2005; 노안심, 2007; 이유훈 등, 2002; 차미주, 2007; 황안섭, 2000)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 사용할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특수교육 전공 분야 교수 1인과 세 차례 수정하였다. 수정된 질문지를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은 2009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수교육 전공 분야 교수와 협의하여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의 실시기간은 2009년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였다. 질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4월 17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4월 17일까지 응답한 교사는 모두 55명이었다. 연구자는 미응답한 교사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설문에 대한 회신을 다시 요청하였다. 이 결과 4월 30일까지 추가로 58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배부한 144개의 설문지 중 총 113명이 질문지에 응답하였으나 시각장애특수학교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응답만을 연구, 분석하기로 하여 최종적인 교사참여 수는 97명이었다.

4.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급담임교사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를 사용하였다. 교사에 관한 기초사항 중 성별, 연령, 학교급, 자격유형 등 유목변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직총경력과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의 교직경력은 평균과 표

dCollection @ chosun

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여부, 작성 시기 등 단일응답을 요구한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의 유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에 포함된 항목,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 등 복수응답을 요구한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의 범주별로 빈도, 케이스백분율 및 반응백분율을 산출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실행 및 평가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시각장애특수학교의 학급담임교사 총 97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실태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대상 학생

이 연구에 참여한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사 97명이 담임하고 있는 학생은 평균 5.55명(표준편차: 2.24)이었다. 이에 비해, 교사들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대상학생은 평균 4.41명(표준편차: 2.61)이었다. 이와 같이 담당학급의 학생수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대상 학생수가 다른 것은 모든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부의 학생만을 위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6개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반면, 5개교에서는 일부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 학교별 담당학급 학생수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대상 학생수를 비교하면 <표 Ⅳ-1>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표 Ⅳ-1> 담당학급 학생수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대상 학생수의 학교별 비교

학교	학급별 학생수		개별화교육계획 대상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	5.25	2.43	1.75	2.51
B	4.80	2.45	4.80	2.45
C	5.27	2.22	5.27	2.22
D	7.62	2.56	7.62	2.56
E	5.00	2.43	4.83	2.43
F	5.60	1.14	5.60	1.14
G	4.87	2.38	4.87	2.38
H	6.56	2.16	3.56	2.24
I	4.27	2.39	1.09	2.50
J	6.17	1.80	6.17	1.80
K	5.43	1.91	4.07	2.23

일부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학급별 학생수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대상학생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시각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학생(단순시각장애학생)에 대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학교별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시각장애학생에 대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실태와 단순시각장애학생에 대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단순시각장애학생을 위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와 같다.

<표 Ⅳ-2> 단순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예	73	75.3
2	아니오	24	24.7
계		97	100.0

dCollection @ chosun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라고 응답한 교사가 73명(75.3%)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교사는 24명(24.7%)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의 대다수(75.3%)가 단순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나 학교의 지침과 상관없이 교사 본인의 관점에서 단순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 단순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 대한 의견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매우 필요하다	13	13.4
2	대체로 필요하다	29	29.9
3	그저 그렇다	15	15.5
4	거의 필요없다	32	33.0
5	전혀 필요 없다	8	8.2
계		97	100.0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2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9명(29.9%)이었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 15명(15.5%),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 13명(13.4%),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교사 8명(8.2%)이었다. '매우 필요하다'와 '대체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42명(43.3%), '거의 필요 없다'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40명(41.2%)으로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보면 단순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사들 간에 상반된 입

dCollection @ chosun

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Ⅳ-2>와 <표 Ⅳ-3>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순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교사가 73명(75.3%)인데 비해 단순시각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42명(43.3%)이라는 점은 실제로 단순시각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교사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여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4>와 같다.

<표 Ⅳ-4> 학년 시작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예	73	75.3
2	아니오	20	20.6
3	현재 구성중	4	4.1
계		97	100.0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교사가 73명(7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교사가 20명(20.6%)이었으며 설문지를 배부한 4월에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중인 교사는 4명(4.1%)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특수교육법

dCollection @ chosun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대부분(75.3%)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했다고 응답한 교사와 구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가 혼재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교사 본인이 주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언제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기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학기 시작 전	0	0.0
2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96	99.0
3	아직 작성하지 않음	1	1.0
계		97	100.0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96명(99.0%)이었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교사는 1명 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맞게 대다수(99.0%)의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4>와 <표 Ⅳ-5>를 비교할 때,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

dCollection @ chosun

지원팀을 구성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73명(75.3%)인데 비해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였다고 응답한 교사가 96명(99.0%)이었다는 점은 일부 교사들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 않은 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화교육지원팀도 구성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이 형식적으로 서류만을 위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이 연구에서는 2009년 현재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및 양식에 포함된 항목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의 출처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응답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6>과 같다.

<표 Ⅳ-6>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출처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국립특수교육원	0	0.0
2	각급교육청	0	0.0
3	단위 학교	93	95.9
4	동료교사	2	2.1
5	자신이 직접 구안	2	2.1
계		97	100.0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구안한 양식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93명(95.9%)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

dCollection @ chosun

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대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구안한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구안한 양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장점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그 학교와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잘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대상학생의 전출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표준화된 양식이 필요하다. A학교와 B학교가 대상학생의 특징을 파악함에 있어 어느 영역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전국 시각장애학교에서 사용과 활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담당교사들의 활용을 높이고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더 실용성이 높을 것이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표시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7>과 같다.

<표 Ⅳ-7>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에 포함된 항목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	케이스백분율 (%)
1	인적사항	96	16.4	99.0
2	현재 학습수행수준	91	15.6	93.8
3	교육목표	95	16.3	97.9
4	교육내용	92	15.8	94.8
5	교육방법	75	12.8	77.3
6	평가계획	79	13.5	81.4
7	학생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51	8.7	52.6
8	기타	5	0.9	5.2
계		584	100.0	·

dCollection @ chosun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사항', '교육목표', '교육내용', '현재 학습수행 수준' 등은 91명(케이스백분율: 93.8%) 이상의 교사들이 개별화교육 작성 시 모두 포함시킨다고 응답하였다. '평가계획'을 포함시킨다고 응답 한 교사는 79명(케이스백분율: 81.4%), '교육방법'을 포함시킨다고 응답한 교사는 75명(케이스백분율: 77.3%), '학생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시킨다고 응답한 교사는 51명(케이스백분율: 52.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제시된 바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학생 인적사항', '교육목표', '교육내용', '현재 학습수행 수준' 등은 대다수의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이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데 비해, '평가계획', '교육방법', '학생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은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의 실태 파악 영역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어느 영역에 대해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생의 실태파악 영역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8>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표 Ⅳ-8> 학생 실태 파악 영역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	케이스백분율 (%)
1	인지발달	78	14.1	80.4
2	운동발달	38	6.9	39.2
3	정서발달	33	6.0	34.0
4	청각활용기술	14	2.5	14.4
5	촉각활용기술	29	5.2	29.9
6	시각활용기술	58	10.5	59.8
7	일상생활기술	60	10.8	61.8
8	사회적기술	49	8.8	50.5
9	보행기술	49	8.8	50.5
10	말하기・듣기	46	8.3	47.4
11	읽기・쓰기	64	11.6	66.0
12	보조공학기술	32	5.8	33.0
13	기타	4	0.7	4.1
계		554	100.0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지발달 실태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8명(케이스백분율: 80.4%)이었고, '읽기・쓰기'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64명(66.0%), '일상생활기술'을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60명(케이스백분율: 61.8%), '시각활용기술'을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58명(케이스백분율: 59.8%)으로서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이 인지발달, 읽기・쓰기, 일상생활기술, 시각활용기술 등에 대한 학생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응답하였다. '보행기술'과 '사회적기술'의 학생 실태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각각 49명(케이스백분율: 50.5%)으로서 인지발달, 읽기쓰기 등에 비해 보행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학생 실태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더 적었다. '촉각활용기술'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9명(케이스백분율: 29.9%)이었

dCollection @ chosun

고, '청각활용기술'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4명으로서 시각장애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촉각 및 청각활용기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는지 모두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 파악 방법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	케이스백분율 (%)
1	표준화된 검사도구	13	4.1	13.4
2	교사가 제작한 평가지	18	5.6	18.6
3	전년도 담임의 자문	75	23.3	77.3
4	전년도 생활기록부나 개별화교육계획	65	20.2	67.0
5	학교에서 개발한 과제분석표	4	1.2	4.1
6	학부모와의 상담	58	18.0	59.8
7	담임교사의 직접 관찰	89	27.6	91.8
8	기타	0	0	0
계		322	100.0	·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임교사의 직접 관찰'로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89명(케이스백분율: 9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년도 담임교사의 자문', '전년도 생활기록부나 개별화교육계획', '학부모와의 상담'은 58명(케이스백분율: 59.8%)이상의 교사들이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교사가 제작한 평가지', '표준화된 검사도구', '학교에서 개발한 과제분석표' 는 18명(케이스백분율: 18.6) 이하의 교사들이 학

dCollection @ chosun

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대부분 담임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검사도구나 과제분석표 등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검사도구나 과제분석표를 제작하여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을 위해 중요하다.

5) 보호자 참여 여부 및 의견 반영 정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 보호자를 참여시키는 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 참여 여부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예	71	73.2
2	아니오	26	26.8
계		97	100.0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를 참여시켰다는 교사가 71명(73.2%)이었고,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교사가 26명(26.8)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대부분(73.2%)의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볼 때, 학생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보호자가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dCollection @ chosun

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26.8%라는 점은 개별화교육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작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받는 란을 반드시 넣고 작성하여 교사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를 참여시켰다면, 보호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 의견 반영 정도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거의 모든 의견을 반영	19	26.8
2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반영	48	67.6
3	거의 반영하지 않음	0	0.0
4	형식적으로 도장만 받음	4	5.6
5	기타	0	0.0
계		71	100.0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반영'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8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의 모든 의견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19명(26.8%), '형식적으로 서류작성을 위한 도장만 받음'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명(5.6%)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대부분(67.6%)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보호자의 의견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아동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 및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

dCollection @ chosun

등하게 참여한다는 전제는 개별화교육계획 과정의 중심사상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화교육계획의 개발에 있어 도움이 되는 귀중한 구성원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서로 다른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며 단순히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닌 능동적인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영역

어느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지 모두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영역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38	21.8	39.2
2	모든 교과	22	12.7	22.7
3	특정교과(국어, 수학 등)	37	21.3	38.1
4	치료지원	18	10.3	18.6
5	발달영역(운동, 인지, 정서 등)	17	9.8	17.5
6	감각기술(청각, 촉각, 시각 등)	18	10.3	18.6
7	시각장애 관련 적응기술	24	13.8	24.7
8	기타	0	0.0	0.0
계		174	100.0	·

dCollection @ chosun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38명(케이스백분율: 39.2%)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교과', '시각장애 관련 적응기술', '모든 교과'를 작성한 교사가 22명 이상, '감각기술'과 '치료지원'은 18명(케이스백분율: 18.6%)으로 응답한 교사 수가 동일했으며, '발달영역'은 17명(케이스백분율: 17.5%)으로 나타났다. 전 영역에서 10명 이상의 교사가 고르게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범위에 대한 의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적절한 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범위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모든 학생, 모든 과목 또는 영역	8	8.2
2	모든 학생,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	19	19.6
3	필요한 학생, 모든 과목 또는 영역	2	2.1
4	필요한 학생,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	68	70.1
5	기타	0	0
계		97	100.0

<표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한 학생,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을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범위로 생각하는 교사가 68명(70.1%)으로 가장 많았

dCollection @ chosun

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든 학생,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으로 생각하는 교사가 19명(19.6%), '모든 학생, 모든 과목 또는 영역'이 8명(8.2%), '필요한 학생, 모든 과목 또는 영역'이 2명(2.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대부분(70.1%)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만을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범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8) 교육목표 수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교육목표를 어느 수준의 시기까지 작성하였는 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교육목표 수준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학기 단위	40	41.2
2	월 단위	35	36.1
3	주 단위	21	21.6
4	기타	1	1.0
계		97	100.0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학기 단위'를 교육목표 수준 시기로 보는 교사가 40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월 단위'로 생각하는 교사가 35명(36.1%), '주 단위'로 생각하는 교사가 21명(21.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학기 단위나 월 단위로 교육목표의 수준을 잡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기단위나 월단위, 주단위 모두 교육목표의 수준으로 작성하는 경우 가장 작은 주단위에 포함시켰다.

dCollection @ chosun

9) 작성 소요 시간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학생 1인당 소요 시간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작성 소요 시간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1시간 미만	3	3.1
2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3	54.6
3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25	25.8
4	5시간 이상	16	16.5
계		97	100.0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소요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53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25명(25.8%), '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교사가 16명(16.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 중 절반 이상(54.6%)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데 학생 1인당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바뀐 법에 따라 학년 초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신입생의 입학과 재학생의 진급, 편입생의 입학 등에 의해 학생 수가 변하게 되고, 환경구성, 교육계획 수립 등의 학급 업무와 기타 학교 업무를 병행함으로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하고 문서로서 형식화된 개별화교육계획이 아닌 효율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과 적용을

dCollection @ chosun

위해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 개별화교육계획의 현실적인 운영,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을 위한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필요에 대한 의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매우 필요하다	35	36.1
2	조금 필요하다	34	35.1
3	그저 그렇다	19	19.6
4	거의 필요없다	6	6.2
5	전혀 필요없다	3	3.1
계		97	100.0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5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4명(35.1%)이었다. '매우 필요하다'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한교사가 69명으로서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고 한 교사 9명에 비하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위의 결과와 같이 많은 수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설문결과와는 다르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고 학교의 거의 모든

dCollection @ chosun

문서작성을 컴퓨터로 하는 지금의 시대상황과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표준화된 개별화교육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사용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2.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의 실태

1)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 정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실제 교육활동에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 정도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전부 실행한다	34	35.1
2	어느 정도 실행한다	47	48.5
3	그저 그렇다	10	10.3
4	거의 실행하지 않는다	6	6.2
5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0	0
계		97	100.0

<표 Ⅳ-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실행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47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전부 실행한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4명(35.1%)이었으며, '거의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6명(6.2%)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전부 실행하는 경우보다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dCollection @ chosun

2) 개별화교육계획의 미 실행 이유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 6명의 응답을 근거로 개별화교육계획 미 실행 이유를 제시하면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개별화교육계획의 미 실행 이유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지 못해서	2	33.2
2	교재 교구 및 지도 자료가 부족해서	1	16.7
3	학급인원이 많아서	1	16.7
4	교사 자신의 의욕과 노력이 부족해서	0	0
5	학교의 업무가 많아서	1	16.7
6	기타	1	16.7
계		6	100.0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교사가 2명(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재 교구 및 지도자료가 부족해서', '학급인원이 많아서', '학교의 업무가 많아서', '기타'라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1명(16.7%)으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 중 개별화교육계획 미 실행 교사들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3)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재교구 확보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재교구 확보 정도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재교구 확보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매우 충분하다	6	6.2
2	어느 정도 충분하다	20	20.6
3	보통이다	44	45.4
4	다소 부족하다	24	24.7
5	매우 부족하다	3	3.1
계		97	100.0

<표 Ⅳ-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44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가 24명(24.7%)이었으며,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0명(20.6%)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고, '다소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27.8%)이 '매우 충분하다'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26.8)보다 높아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재교구 확보 상황은 보통이거나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특수학교의 운영비만으로는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교구를 충분하게 확보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대폭 인상하거나, 그 외의 학교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dCollection @ chosun

4)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ICT활용 정도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을 위해 ICT를 활용한 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ICT활용 정도에 관한 실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매우 많이 활용한다	7	7.2
2	약간 활용한다	27	27.8
3	보통이다	38	39.2
4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18	18.6
5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7	7.2
계		97	100.0

<표 Ⅳ-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8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약간 활용한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7명(27.8%),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18명(18.6%)이었다. 또한 '매우 많이 활용한다'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7명(7.2%)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약간 활용한다'와 '매우 많이 활용한다'라고 응답한 비율(35%)이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25.8%)보다 높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39.2%)까지 더하면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해 ICT 활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5) 개별화교육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학부모와의 의사교환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의사교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개별화교육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학부모와의 의사교환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매우 많이 이루어진다	13	13.4
2	조금 이루어진다	44	45.4
3	그저 그렇다	20	20.6
4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19	19.6
5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1	1.0
계		97	100.0

<표 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교사가 44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20명(20.6%),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한 교사가 19명(19.6%)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조금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거나 '매우 많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58.8%)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20.6%)보다 높아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3.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의 실태

1)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방법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모두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방법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단위시간마다 형성평가 실시	10	7.9	10.3
2	일별로 종합평가 실시	5	4.0	5.2
3	주별로 종합평가 실시	24	19.0	24.7
4	월별로 종합평가 실시	69	54.8	71.1
5	학기별로 종합평가 실시	18	14.3	18.6
계		126	100.0	

<표 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로 종합평가 실시'라고 응답한 교사가 69명(케이스백분율: 71.1%)이었고, '주별로 종합평가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4명(케이스백분율: 24.7%)이었으며, '학기별로 종합평가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8명(케이스백분율: 18.6%)이었다. 또한 '단위시간마다 형성평가실시'라고 응답한 교사가 10명(케이스백분율: 10.3%)이었고, '일별로 종합평가실시'라고 응답한 교사가 5명(케이스백분율: 5.2%)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방법으로 월별 종합평가, 주별 종합평가, 학기별 종합평가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2)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형태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를 어떤 형태로 실시할 것인지 모두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3>과 같다.

<표 Ⅳ-23>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형태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	목표 성취도 2단계 평가	5	4.1	5.2
2	목표 성취도 3단계 평가	28	23.1	28.9
3	목표 성취도 5단계 평가	26	21.5	26.8
4	목표 성취도 서술 평가	44	36.4	45.4
5	목표 성취도 지필 또는 수행평가	17	14.1	17.5
6	기타	1	0.8	1.0
계		121	100.0	

<표 Ⅳ-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를 '목표 성취도 서술 평가'형태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44명(케이스백분율: 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목표 성취도 3단계 평가'형태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명(케이스백분율: 28.9%), '목표 성취도 5단계 평가'형태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6명(케이스백분율; 26.8%)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을 평가함에 있어 목표 성취도 서술 평가, 목표 성취도 3단계 평가, 목표 성취도 5단계 평가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3)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활용 계획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두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Ⅳ-24>와 같다.

<표 Ⅳ-24>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계획

번호	내 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	케이스백분율 (%)
1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자료	68	27.9	70.1
2	개인별 성취 확인자료	72	29.5	74.2
3	보호자와의 상담자료	48	19.7	49.5
4	생활기록부 작성자료	36	14.7	37.1
5	생활통지표 작성자료	20	8.2	20.6
계		244	100.0	

<표 Ⅳ-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별 성취 확인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72명(케이스백분율: 7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68명(케이스백분율: 70.1)이었으며, '보호자와의 상담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8명(케이스백분율: 49.5%)이었다. 또한 '생활기록부 작성자료'나 '생활통지표 작성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교사가 20명 이상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취 확인자료 또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항목 모두 20명 이상의 교사가 응답함으로서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방면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4.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선 방향

1)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를 지난 3년간 몇 회 받았는 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5>와 같다.

<표 Ⅳ-25>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 횟수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받은 적 없다	19	19.6
2	1~2회	66	68.1
3	3~4회	11	11.3
4	5회 이상	1	1.0
계		97	100.0

<표 Ⅳ-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회'받았다고 응답한 교사가 66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19명(19.6%)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를 대부분(80.4%) 1~2회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지 질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19.6%의 교사가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연수를 개설하고, 교사들이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 개별화교육계획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가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및 실행에 얼마나

dCollection @ chosun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 중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6>와 같다.

<표 Ⅳ-26>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의 도움 정도

번호	내 용	빈도(명)	백분율(%)
1	많이 도움이 되었다	16	16.5
2	조금 도움이 되었다	35	36.1
3	그저 그렇다	23	23.7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3.1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0
6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경험 없음	19	19.6
계		97	100.0

<표 Ⅳ-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35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23명(23.7%)이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거나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52.6%)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4.1%)보다 높아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 중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들 중 반수 이상이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데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로 조사된 점은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의 질을 높이거나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의 완성도와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2)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중요도 순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순위대로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7>과 같다.

<표 Ⅳ-27>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중요도 순위

항 목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우선순위 총점(점)
일상생활기술	26	18	16	130
인지발달	24	8	11	99
읽기・쓰기	15	12	9	78
보행기술	5	13	16	57
교과영역	12	6	5	53
사회적기술	3	13	11	46
시각활용기술	6	6	7	37
촉각활용기술	3	6	4	25
운동발달	1	4	4	15
말하기・듣기	1	4	3	14
보조공학기술	0	3	6	12
정서발달	0	2	5	9
청각활용기술	1	1	1	6
기타	0	0	0	0

<표 Ⅳ-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위별로 선택한 인원수에 1순위에는 × 3점을, 2순위에는 × 2점을, 3순위에는 × 1점으로 나온 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우선순위 총점을 확인할 결과 '일상생활기술'이 1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는 '인지발달'이 99점, '읽기·쓰기'가 78점, '보행기술'이 57점, '교과영역'이 53점, '사회적기술'이 46점, '시각활용기술'이 37점, '촉각활용기술'이 25점, '운동발달'이 15점, '말하기·듣기'가 14점, '보조공

dCollection @ chosun

학기술'이 12점, '정서발달'이 9점, '청각활용기술'이 6점의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의 순위를 선택함에 있어 숫자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3명 이상의 교사가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사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발전시켜야 할 영역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다양한 영역을 중점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3)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개선

시각장애학교에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세 가지를 순위대로 기입하라는 질문에 대한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Ⅳ-28>과 같다.

<표 Ⅳ-28>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개선

항 목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우선순위 총점(점)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	49	14	14	189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	15	30	17	122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	18	25	10	114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규 개정	5	6	23	50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확보	4	13	8	46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5	8	11	42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보호자교육 실시	1	1	14	19
기타	0	0	0	0

dCollection @ chosun

<표 Ⅳ-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위별로 선택한 인원수에 1순위에는 × 3점을, 2순위에는 × 2점을, 3순위에는 × 1점으로 나온 수를 모두 합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우선순위 총점을 확인할 결과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이 189점으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이 122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이 114점,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규 개정'이 50점,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확보'가 46점,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교사 연수 확대'가 42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보호자교육 실시'가 19점의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이 시각장애학교에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시각장애특수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현장에서 어떻게 작성·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특수교사들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실행, 평가, 개선방향의 실태분석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특수학교 11개교의 학급 담임교사 97명이었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및 실행, 평가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강남숙(2005), 노안심(2007), 이유훈 등(2002), 차미주(2007), 황안섭(2000)이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우편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집하였는데, 전체 144개의 설문지 중 총 113부를 회수하였으나 시각장애특수학교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응답만을 연구, 분석하기로 하여 97부를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순위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에 있어 대다수가 작성시기와 포함항목 등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에 있어 반수정도(48.5%)가 부분적으로 실행하

dCollection @ chosun

고 있었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위한 교재·교구는 과반수이상(70.1%)이 보통이거나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위한 ICT활용은 과반수이상(66.0%)이 보통이거나 약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에 있어 월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가결과는 개인별 성취 확인자료 또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넷째,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선방향에 있어 과반수 이상이 과거 3년간 1~2회의 연수를 받았으며, 개선방향으로는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1위),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2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3위)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실태를 살펴볼 때, 대다수가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시기로서 배치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와 포함하여야 할 항목 등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지도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이 작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별화교육지원팀도 구성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이 형식적으로 서류만을 위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실태에 있어 반수정도가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고,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을 위한 교재 교구는 보통이거나 다소 부족하였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 대로

dCollection @ chosun

실행은 하나 많은 수가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지 못하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으로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평가 자료의 개발, 교재 교구와 ICT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실태에 있어 주로 월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목표성취도 서술평가와 목표성취도 3단계 평가 형태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별 성취 확인자료 또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는 대상 학생의 명시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거나 개별화교육계획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학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평가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국 시각장애특수학교 담임교사들의 개별화교육계획 개선방향에 있어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1위),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2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3위)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생의 개인차 및 개인내차에 적절한 교재 교구가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이 형식적인 아닌 현실적으로 운영되어 끊임없이 소통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의 경영자(교장, 교감)와 보호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실제

dCollection @ chosun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개별화교육계획을 잘 작성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사들이나 상급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이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나 재교육이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연수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교육청, 각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차원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시각장애특수학교의 학생들은 그 양상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각의 다양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데 연구 기관이나 상급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양식보다 교사 스스로 제작한 양식이나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여전히 학생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교사들의 다양한 선택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적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맞는 IEP작성을 위한 다양하고도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으로 학급인원의 과다, 학교의 과다한 수업 및 업무 등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바람직한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교재나 교구들도 충분히 학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 1인당 담당학생 수를 개별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과중한 교사 업무 경감 및 상시적인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운영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별화교육계획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겠다.

d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강남숙 (2005). **중등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주.

노안심 (2007). **전남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개별화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박성미, 안성우 (2008). **초등 특수학급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47권 제1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소.

박원희, 이민식, 장진섭, 하미경 (2002). **특수교육과정과 IEP의 실제**. 서울: 양지사.

박윤규 (1996). **시각장애학교의 개별화교육 실천사례.** 국내 세미나 자료.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송수일 (2007).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정신지체학생 부모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서울.

이유훈 (1999). **개별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제44회 전국 특수교육연수회.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이유훈, 권주석, 김용한 (1999).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운영지침.**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이유훈, 김계옥, 정동일, 정희섭 (2002). **특수교육기관 운영 실태분석.**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이유훈, 김형일 (2002).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안과 실행.** 서울: 교육과학사.

이해균 (1996). **시각장애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특수교육정책연구 보고서, 서울맹학교, 서울.

차미주 (2007). **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창원.

최은희 (2007). **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추은숙 (2008). **지체부자유학교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한성희 (1992) **개별화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서울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dCollection @ chosun

황안섭 (2000).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개별화교육 운영 실태 및 수행능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대구.

dCollection @ chosun

부록

【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유민수입니다.

이 설문지는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을 읽으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일 것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4월 17일까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4월 1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유민수
지도교수 김영일

dCollection @ chosun

Ⅰ. 기초조사

※해당 항목 번호를 기입하시거나 응답을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1. 성별은?
 ①남
 ②여
2. 연령은?
 ①만 29세 이하
 ②만 30세 이상 39세 이하
 ③만 40세 이상 49세 이하
 ④만 50세 이상
3. 총 교직 경력은? (2009년 3월 기준)
 (　　)년 (　　)월
4. 시각장애학교에서 총 교직 경력은? (2009년 3월 기준)
 (　　)년 (　　)월
5. 담임하고 계시는 학년은?
 초등학교 (　　)학년
 중등학교 (　　)학년
 고등학교 (　　)학년
6. 소지하신 교사자격 유형은?
 ①일반교육
 ②특수교육
 ③일반+특수교육
 ④기타

Ⅱ.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태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1. 담임하시는 학급의 총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2. 담임하시는 학급의 학생 중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dCollection @ chosun

(　　)명

3. 학기 시작 2주 이내에 학생별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현재 구성 중

4. 학생별 개별화교육계획은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①학기 시작 전

②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③아직 작성하지 않음

5. 금년도에 사용하신 개별화교육계획의 양식 출처는?

①국립특수교육원

②각급교육청

③단위 학교

④동료교사

⑤자신이 직접 구안

⑥기타(　　)

6. 금년도에 사용하신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에 포함된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인적사항

②현재 학습수행수준

③교육목표

④교육내용

⑤교육방법

⑥평가계획

⑦학생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⑧기타(　　)

7.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중 어느 영역에 대해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셨습니까? 해당하는 영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인지발달

②운동발달

③정서발달

④청각활용기술

⑤촉각활용기술

dCollection @ chosun

⑥시각활용기술
⑦일상생활기술
⑧사회적기술
⑨보행기술
⑩말하기・듣기
⑪읽기・쓰기(점자 또는 일반문자 등)
⑫보조공학기술(한소네 브레일이나 확대 독서기 등)
⑬기타( )

8. 학기 초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셨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표준화된 검사도구
②교사가 제작한 평가지
③전년도 담임의 자문
④전년도 생활기록부나 개별화교육계획
⑤학교에서 개발한 과제 분석표
⑥학부모와의 상담
⑦담임교사의 직접 관찰
⑧기타( )

9.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보호자를 참여시키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9-1. 만약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 보호자를 참여시키셨다면, 보호자의 의견을 개별화교육계획에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①거의 모든 의견을 반영했다
②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반영했다
③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④형식적으로 서류작성을 위한 도장만 받았다
⑤기타( )

10. 개별화교육계획은 다음 중 어느 영역을 위주로 작성하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교과 및 교과 외 활동
②모든 교과
③특정교과(국어, 수학 등)

dCollection @ chosun

④치료지원
⑤발달영역(운동, 인지, 정서 등)
⑥감각기술(청각, 촉각, 시각 등)
⑦시각장애관련 적응기술(일상생활기술, 보행기술, 보조공학기술 등)
⑧기타( )

11.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모든 학생, 모든 과목 또는 영역
②모든 학생,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
③필요한 학생, 모든 과목 또는 영역
④필요한 학생, 필요한 과목 또는 영역
⑤기타( )

12.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목표는 어느 수준의 시기까지 작성하셨습니까?
①학기 단위
②월 단위
③주 단위
④기타( )

13. 금년 3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데 학생 1인당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1시간 미만
②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③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④5시간 이상
⑤기타( )

14.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데 표준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필요하다
②조금 필요하다
③그저 그렇다
④거의 필요없다
⑤전혀 필요없다

15. 다른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셨습니까?

dCollection @ chosun

①예
②아니오
16. 다른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필요하다
②대체로 필요하다
③그저 그렇다
④거의 필요없다
⑤전혀 필요없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시행)
17. 개별화교육계획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전부 시행한다
②어느 정도 시행한다
③그저 그렇다
④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⑤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17-1.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한 대로 시행하지 못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위 문항의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에 답하신 선생님께서만 응답하십시오.)
①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지 못해서
②교재 교구 및 지도 자료가 부족해서
③학급인원이 많아서
④교사 자신의 의욕과 노력이 부족해서
⑤학교의 업무가 많아서
⑥기타( )
18.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교재 교구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매우 충분하다
②어느 정도 충분하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부족하다
⑤매우 부족하다

dCollection @ chosun

19. 개별화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①매우 많이 활용한다
②약간 활용한다
③보통이다
④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⑤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20. 개별화교육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의사교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매우 많이 이루어진다
②조금 이루어진다
③그저 그렇다
④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⑤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
21.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를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단위시간마다 형성평가 실시
②일별로 종합평가 실시
③주별로 종합평가 실시
④월별로 종합평가 실시
⑤학기별로 종합평가 실시
22.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는 어떤 형태로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목표 성취도 2단계 평가(성취, 미성취)
②목표 성취도 3단계 평가(잘함, 보통, 못함)
③목표 성취도 5단계 평가(매우 잘함, 잘함, 보통, 거의 못함, 전혀 못함)
④목표 성취도 서술 평가
⑤목표 성취도 지필 또는 수행평가
⑥기타( )
23. 개별화교육계획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dCollection @ chosun

①개별화교육계획의 수정자료
②개인별 성취 확인자료
③보호자와의 상담자료
④생활기록부 작성자료
⑤생활통지표 작성자료
⑥기타( )

(기타)

24.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를 지난 3년간 몇 번 받았습니까?
①받은 적 없다
②1~2회
③3~4회
④5회 이상

25. 개별화교육계획에 관한 연수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실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많이 도움이 되었다
②조금 도움이 되었다
③그저 그렇다
④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6. 시각장애특수학교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인지발달
②운동발달
③정서발달
④청각활용기술
⑤촉각활용기술
⑥시각활용기술
⑦일상생활기술
⑧사회적기술
⑨보행기술

dCollection @ chosun

⑩말하기・듣기
⑪읽기・쓰기(점자 또는 일반문자)
⑫보조공학기술(한소네 브레일이나 확대 독서기 등)
⑬교과영역
⑭기타( )

27. 시각장애학교에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개발
②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현실적인 운영
③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교사연수 확대
④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보호자교육 실시
⑤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확보
⑥다양한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
⑦개별화교육계획 관련법규 개정
⑧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dCollection @ chosun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68190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유민수 한문 : 兪珉守 영문 : Min-Su Yoo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기안아파트 102동 205호				
연락처	E-MAIL : lovelyminsu@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시각장애특수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 방향 영어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at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09 년 월 일

저작자 : 유 민 수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dCollection @ chosun